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소고
-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 판결을 중심으로(대법원
2016.10.27.선고 2014추514) -

성 은 빈*

Contents

- I. 서론
 - II. 대상판결의 개관
 - III.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IV. 출점 규제 등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시사점
 - V. 결론
-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조사관(법학박사).

I. 서론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 1월 23일 일부개정을 통해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강화와 더불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시장경제질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에 따른 소극적 국가개입, 저성장기조로 서민들의 합리적 소비성향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점포입점이 늘어남에 따른 주변점포와의 상생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형마트 영업휴일에 의무이행에 관한 조례발의와 소송, 상생을 기조로 한 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조례발의 등의 여러 노력이 이슈가 되고 국회를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관한 활발한 토론회 등에 따른 성과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경기도의회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안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쟁점이 된 상권영향평가 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규모점포 등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 제8조가 과연 객관적 검증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인지 의문이다. 또한 상권영향평가를 기초자치단체 이외에 시·도에서 자치사무로서 객관적 상권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위법을 넘어서는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판례평석을 통해서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대상판결의 개관¹⁾

1. 소송배경 및 사건의개요

경기도의회는 2013.10.28. 소속 의원 15명의 발의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2013.12.20.)되자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 위반 등 상위법령에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2014.1.7.)를 하였으나 경기도의회는 재의결(2014.2.13.)을 거쳐 본 조례안을 공포(2014.3.4.)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본 사건 조례안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2014.3.4.)을 제기하였다.

2. 주요 쟁점

(1)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인지 여부

(2)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3. 청구취지 및 이유

(1) 조례안의 주요내용

이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이 도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

1) 대법원 2014추514 조례안제의결무효확인.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상권영향평가란 도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설치·운영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특히 대규모점포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도지사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1. 시장·군수로부터 대규모 점포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상권영향평가를 신청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군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1항). 도지사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야 하며,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2항~4항).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상권영향평가의 결과가 1.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지역 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 및 피해에 대해 입점예정업체의 상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군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쳐 관련 시·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요구 시 해당 시·군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및 권고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제3항).

(2) 조례안의 법령위반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법령우위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제5조, 제6조),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7조의5)과 특히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 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각종 규제권한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것(제8조, 제11조, 제12조의2)을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임을 주장하였다.²⁾

4. 판결 요지

(1)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에서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상권영향평가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볼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조례안이 법률에 아무런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권영향평가와 별개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상권평가위원회로부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정책자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시장·군수에게 의결개진과 권고를 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 같은호카목, 같은조제4호거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1]에서 시도의 자치사무로 예시한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 소비자 보호, 지역경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이지 않고 그 비용도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임을 알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

2) 2014추514 조례안제의결무효확인 소장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음.

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경기도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의2, 시행령 제6조의5제2항 등에서 대규모점포의 등록과 상권영향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고, 이에 관한 회의체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안이 도·소매업 관련 업무담당공무원과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구성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경기도지사가 의견개진 또는 권고의 방식으로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전달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의 내용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조례안은 원고가 중소기업육성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이 설치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사무에 관한 것이고, 대규모점포개설 희망자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지사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기초자치단체장 권한에 법률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도지사가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해당 시·군에 대규모점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전하거나 권고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른 의견개진이나 권고의 효력을 상회하는 구속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이 사건 조례안 제정 배경 및 입법취지

이 사건 조례안 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통산업발전법」제 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 등록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를 사실상 점포개설자에 맡기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없고 법령에서 정한 서류제출 등이 충족된 경우 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상권영향평가서가 객관적 근거로 되었는지, 형식적인 사항으로 작성·제출되어 주변 상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이 사건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차원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임원, 소비자단체대표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대규모점포입점으로 인한 상권영향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상권영향평가서 등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의견개진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 영향평가를 통해 주변상권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입법의 취지이다.

2. 「유통산업발전법」개관

이 사건 조례안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함.)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은 제1조(목적)에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법의 제정목적이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 제2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점포의 종류와 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제5조,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유통산업발전의 기본방향, 여건변화전망,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 지역중소 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지역유통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제7조),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두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의5). 그 밖에 이 사건 조례안의 관련 조항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규제관련 사항 등도 명시되어 있다(제8조 이하).

3. 상권영향평가 제도의 취지 및 문제점

상권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출점시의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대규모점포 등이 입점하는 데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상권영향평가는 기존사업자와 신규 대규모점포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을 목표로 하여, 주요 교통수단 현황, 인구수, 지역의 집객시설, 기존 사업자 업종분포 등 인구이동, 소비층, 건축물 배치, 사업현황 변화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점포 등의 업종이나 입점 시기 등에 영향을 받아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자료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유통산업발전법」개정(2013.3.23.시행) 당시 대규모점포등으로부터 상

권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하게 한 취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상권영향평가서 첨부 이외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제한 확대 등 다른 부분도 함께 개정되긴 했지만 이 법의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이 법의 개정배경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출점제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근거를 도입·시행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SSM의 편법·위장입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확장이 중소형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대형마트가 지자체의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약화된 실정임을 고려하여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의 제제강화와 더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다.

요컨대, 「유통산업발전법」은 제정부터 수차례의 개정까지 그 제·개정 목적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에 실제 사례나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대기업 유통백화점의 패션아웃렛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피해대책마련 시정요구와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는 복합쇼핑몰의 출점에 대한 국토이용, 도시계획 또는 환경관련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시정사항으로

주문한바 있다.³⁾ 또한 김제남(19대) 국회의원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0여개 상권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유통대기업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는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상권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전통상점가를 누락한 사례 등을 토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신규 입점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지적된바 있다.⁴⁾ 이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권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외부평가기관이 아닌 입점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이 스스로 한다는 부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등록처로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제출서류 미비나 미진할 경우 보완요청 이외에 내용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검토하여 반려하거나 등록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물론 상권영향평가서 작성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상권영향평가를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등 법령상 규제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만으로 상권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점포등이 상권영향평가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나 주변 중소유통업자 또는 골목상권의 상인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다 입점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추궁이 어렵다는데 있다.⁵⁾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상권에 돌아갈 것이다.

4. 상권영향평가서 등록절차 및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 등록하며,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가 미진

3)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2016.6. 참조.

4) 위클리서울, “상권영향평가서, 입점하는 유통 대기업들이 직접 작성한다?”, 2015.9.9.자 기사.

5) 양창영, “유통산업발전법의 현황과 개정 방향”, 발제문, 33면,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향 토론회』, 김제남의원 주최 국회토론회(2015.2.2.).

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작성 및 기준 방법으로는 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공간적 범위에 경우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5. 이 사건 조례안 판결이유에 대한 소견

판결이유에 대한 쟁점은 위에서 적시한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가 청구이유에서 지적했듯이 첫째,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위법한지에 관해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별개로 경기도에서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의견개진·권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자치사무로써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되었다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경기도지사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기초자치단체장 권한에 법률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상회하는 구속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이 사안의 쟁점은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안의 위법성유무에 관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 조례안의 취지가 「유통산업발전법」과 무관하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의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위 법령에 위임이 없더라도 별도의 자치사무로써 가능하다는 판단도 중요하다. 또한, 상권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등의 조례안의 내용이 법에서 규정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이 사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포괄적으로 별개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넓혀준 것으로 합당한 판단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지방자치 관련 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법령우위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22조만을 들어 조례안에 대한 협소한 해석에 대해 비판해왔다.⁶⁾ 실제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겪는 일 중 법령위임

여부와 관련 법 관계에 있어서 매우 협소하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재의요구 및 제소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2010년도부터 2017년 6월 현재 재의요구 건수가 23건에 달하는 실정이며, 이 중 중앙정부 지시로 인한 것이 5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개입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조례안재결결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지방의회가 승소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법원의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의회 입법권 확대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본 판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위법여부와 도지사의 상권영향평가 실시가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다룬 한계가 있다. 상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 중요성 등이 드러나지 않아 상권영향평가가 갖는 입법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IV. 출점 규제 등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시사점

대형점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입법례는 외국의 입법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출점을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례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명시적 법률로 출점규제는 없지만 입지규제, 영업시간 규제 등 약한 수준의 규제는 존재한다. 많은 국가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국의 규제의 출발점은 다르다. 일본은 도시계획, 소음방지 등을 규제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독일은 건축법에 근거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영업시간 규제는 노동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의 영업규제는 일요일 휴무라는 종교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⁷⁾

6) 문병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제38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2, 385면; 전훈,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공법학연구」 제12권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11. 65면. 등 다수.

7) 국가별 시간규제에 대하여는 최병규, “유통산업발전과 독일 법제 및 한국 현재 결정례 분석”, 「유통법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유통법학회, 2015, 167쪽 참조.

여기서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기타 출점규제에 관한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찾되,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각 국의 출점규제(등록규제, 입지규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점 규제 등에 관한 해외사례

(1) 일본

1950년대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대형슈퍼마켓 등장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1973년 10월 「대규모소매점포법」(약칭: 대점법)이 제정되었다. 주요규제 내용으로는 건물설치자의 대규모소매점포의 점포면적 등에 관한 신고와 대규모소매점의 신설이 주변 소매업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점포면적에 대한 규제, 출점시기 등에 관한 규제가 있었다.⁸⁾ 미국이 1997년 비관세장벽을 이유로 대점법을 WTO에 제소하자, 대점법을 폐지하여 2000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약칭: 대점입지법)으로 대체하면서 간접규제로 전환하였다. 대점입지법에 따라 교통 등 주민편리성,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대형소매점 출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도시계획법을 통해 대형소매점 입지가능 용도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입지규제도 하고 있다.⁹⁾

(2) 미국

출점 및 입지규제에 대한 법률조항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구획화 조례에만 적용된다.¹⁰⁾ 구획화는 교통혼잡, 소음방지, 환경보호 등을 위해 토지의 용도, 도시 건축물의 용도, 위치, 규모 등을 지정하는 제도로 구획화 조례에 토지용도,

8) 강영기, “일본의 대규모점포관련 입법의 변천을 통해 본 유통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6, 135~136면.

9) 신기동, 이수진, 이성룡,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GRI논총」 제40호, 2012.3.22., 9-10면.

10) 최병규, “유통산업발전법과 독일 법제 및 한국 현재결정례 분석”, 「유통법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유통법학회, 2015. 166면.

건축물의 규모 등의 제한을 규정하여 대형소매점의 출점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규모가 큰 개발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Economic Impact Analysis)를 상당수 지자체가 의무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Maine주 사례의 경우 약 6,968㎡를 초과하는 대규모소매점 개발 시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¹¹⁾ 또 다른 사례로는 경제적 영향평가 이외에 용도지역제에 의한 입지규제나 공공복리나 이익보장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유통시설 설립규제 등에 따라 출점규제를 하기도 하는데, 뉴욕시의 경우 월마트 입점 시 도시계획적 규제로 개점이 금지되기도 하였다.¹²⁾

(3) 독일

독일은 대형 소매업을 포함한 대형건축물 일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근거법은 건축법(Baugesetzbuch; BauGB)과 건축이용령(Baunutzungsverordnung; BauNVO)이다. 건축이용령에서는 매장면적 1,200㎡ 이상의 대형소매점의 경우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기반구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특별지구¹³⁾ 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등 입지규제를 두고 있으며 각 주에 경우에도 국토발전계획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규제범위를 정하고 있다. 규제상한면적은 주에 따라 다르나 소매업의 경우 건설면적 1,200㎡, 매장면적 800㎡를 초과하면 대형소매점으로 간주되어 규제된다. 각 주의 도시건설 발전계획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 대형소매점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권유하고 있으며, 마지막을 각 주 소매업조례에 따라 기존상권 매출액의 약 10% 이상의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출점조치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¹⁴⁾

우리의 경우 대형마트라는 기준으로 의무휴일제를 실시하고, 규제의 목적은

11) 소상공인진흥원,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2009.9. 8면.

12) 신기동, 이수진, 이성룡, 전개보고서, 10-11면.

13) 독일건축이용령 제11조는 건설지구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지역들을 기타 특별지구로 정하고 있다.

14) 김윤정,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10.31., 111~116면, 독일 사례를 요약하여 참조하였음.

중소상인, 골목상인 보호이다. 그러나 독일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¹⁵⁾ 출발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법률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이유로 하고 있고,¹⁶⁾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달성하려는 공익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휴식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현실¹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독일의 입법례는 향후 의무휴일제의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1973년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출점 규제를 강화한 르와이에법을 제정하여 매장면적 1,500㎡를 초과하는 점포의 신설 및 확정을 위해서는 지역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했고, 1996년에는 더 강력한 라파랭법이 제정되어 승인대상을 300㎡이상의 점포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2007년 집권한 사르코지 정부는 프랑스 유통산업의 효율성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완화 차원에 따라 「경제현대화법」이 제정되어 2009년부터 종전 300㎡에서 1,000㎡이상으로 완화되었다.¹⁹⁾

현행 프랑스 상법전상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한 출점규제의 내용은 르와이에법과 라파랭법 및 경제현대화법상 각종 규제에 대한 산물이다. 특히, 1000㎡ 이상 매장을 가진 대규모유통업점이 출점하기 위해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데파뜨망 상업정비위원회는 프랑스 상법전에 따라 국토정비, 지속가능한 발전, 소비자보호의 측면과 영업계획의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한다.²⁰⁾

15) 최병규, 위의 논문, 178쪽.

1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7)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8) 이주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직원 휴식권도 신경 써야”, 2013.7.16. (<http://www.ajunews.com/view/20130716000479>).

19) 주하연, 최윤정, “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산업조직연구」 제23집 제1호, 한국산업조직학회, 2015, 74면.

20) 김윤정, 전계 보고서, 100면.

2. 상권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방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점 및 입지규제에 관한 제한이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와 같이 대규모점포등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건축법 등에서 대형소매점에 대한 위해 환경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 별도의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특별지구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는 기존 상가의 매출액을 고려한 규제도 하고 있어 주변 상점보호 및 주변에 미치는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상업정비위원회의 영업허가를 요건으로 국토정비, 지속가능한 발전, 소비자보호 등의 관점에서 출점영향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²¹⁾ 우리의 경우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서등의 제출로 등록제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상이하다 할 수 있다.

위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상권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해본다. 물론 본고는 영업시간 규제를 포함하여 기타 상생관련 다른 법령을 논외로 하여 쟁점사항이 이 사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인 상권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다뤄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이지만 기존 상권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각국 사례를 참고해볼만 하다 생각한다. 먼저 위에서도 주장한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생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보 등에 관한 취지와 달리 매우 느슨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주민의 동의 또는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지역 소상공인 등 참여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단계부터 주민의 동의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참여에 대한 절차를 부여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경우처럼 상권정비위원회와 같은 제3자의 기관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 법에서도 유통발전협의

21) 김윤정, 전계 보고서, 164면.

회를 두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되어있어 자칫 지역이익에 따른 유치경쟁이나 로비에 막혀 독립성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처럼 제3의 독립적 기관으로 협의회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 사건 조례안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상권영향평가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협의회와 별도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분석을 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결과에 따른 의견개진이나 권고만 하도록 하여 구속력은 없으나 객관적 자료로 참고하여 도민의 알권리와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꾀하도록 하는 취지로 제안한 사항이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관계자로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요소도 갖추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도시계획 단계부터의 계획적 규제 및 광역자치단체에의 역할부여

독일이나 일본 등의 경우처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민의 안전과 환경, 교통,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가치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적 규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²²⁾ 경기도의 경우처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객관적인 정보제공 차원 및 피해방지 등을 고려한 상권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두는 사항도 필요해 보인다. 물론 지나친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겠으나, 출점 전부터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영업시간 제한 등 대규모점포등의 입점 후에 대한 규제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22) 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 국정감사정체자료실, 2015.10, 17면.

(3) 출점 후에도 지속적 관리체계 필요

현재 국회에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에 대한 실효성 부재로 다양한 개정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 중 올 8월23일 발의된 정유섭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상권변화 등에 평가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구체적 법적근거 및 평가기준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면서, 출점 전 뿐만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대형마트가 입점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부가 마련하고 업체에 결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권영향평가서가 출점 전 요건이라면 이 부분은 대규모 점포등이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함께 고려해 볼만한 제도라 생각한다.

V. 결론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에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등과 일반 골목상권, 중소기업등 간의 상생의 일환의 하나로 규정한 상권영향평가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이다. 물론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등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요구하고 그 밖에 영업시간 제한 등 상생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은 인정한다. 한편으로는 소비 및 유통환경의 변화와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서민의 합리적 소비에 대한 욕구 등이 맞물려 점점 대기업 위주의 복합쇼핑몰이 집중되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어 단지 규제가 답인가라는 의문과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비판도 있다.²³⁾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23) 국회의원 김제남 등 주취(2015.2.2.) 토론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으로 규제시차의 발생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유통업의 경우 급속한 영역한 융복합추세와 정보기술변화에 따른 사업영역의 다변화에 규제대상 및 규제내용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과 다수의 이해당사자와 다양한 사업범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규제회피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향 토론회」 26-27면.

격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대규모점포 측에만 맡기고 이를 검토한다는 식의 입법은 제고해야 한다. 이 사건 조례안의 경우 특히 원고 측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법의 문리해석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피고인 의회가 도민의 대표자로서 객관적 기준으로 상권영향평가를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민의 알권리 실현과 도의 정확한 상권분석으로 인한 상인의 피해가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의견개진과 권고의 형식으로 유통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사항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은 분명 제고해 봐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물론 규제형태를 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의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을 비롯해 본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SSM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에 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게에 오히려 소비자 복지를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부분과 따라서 중소기업자들도 전문화 협업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²⁴⁾ 또한 규제와 제한에 급급한 정책을 펴는 현재의 법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항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모든 상권에 대해 일률적인 정책을 만들어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려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전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고 유통발전협의회 등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제3의 독립된 기관이나 주민참여 등으로 확대하는 최소한의 입법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로 지역 상권에 맞는 역할을 조례 등에 따라 입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본고에서 다룬 경기도 이 사건 조례안처럼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상권영향평가제도라도 개선하겠다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입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중앙이나 집행부에서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비판하고 싶다.

24) 김영용,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월간경영계」 397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16-19면 참조.

다른 하나는 특히 이 사건 조례안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규정을 둘러싼 조례자체의 엄격하고 법령에 얽매이는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해 그간 지방의회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례가 가지는 핵심을 보지 못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 사건 조례안 판결에서만은 해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성년을 훌쩍 넘어 청장년으로 접어드는 기간 동안 특히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접하지 못하고 국가의 부속 행정기관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이 점차 해소되고 문제인 정부 출범 직전부터 지방분권과 지방분권에 기반한 개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특히 지방분권 중에서도 특히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²⁵⁾

25) 이미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자치법규는 총 95,002건(조례 71,220건, 규칙 23,782건)으로 전년대비 3,759건(4.1%)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 자치법규 평균 보유수는 시도가 시군구보다 약 1.6배 많이 보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과, 「201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1면.

참고문헌

- 강영기, “일본의 대규모점포관련 입법의 변천을 통해 본 유통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6.
-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2016.6.
- 김영용,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월간경영계」397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 김윤정, “대· 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10.31.
- 문병호, “지방의회 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제38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2.
- 신기동, 이수진, 이성룡,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GRI논총」제40호, 경기연구원, 2012.3.22., 9-10면.
- 소상공인진흥원,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2009.9.
- 양창영, “유통산업발전법의 현황과 개정 방향”, 발제문, 33면.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향 토론회」, 김제남의원 주최 국회토론회(2015.2.2.).
- 전훈,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공법학연구」제12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11.
- 주하연, 최윤정, “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산업조직연구」제23집 제1호, 한국산업조직학회, 2015.
- 최병규, “유통산업발전법과 독일 법제 및 한국 현재결정례 평석”, 「유통법연구」제2권 제1호, 한국유통법학회, 2015.
- 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 국정감사정책자료실, 2015.10.
- 2014추514 조례안제의결무효확인 소장, 판결문.

위클리서울, “상권영향평가서, 입점하는 유통 대기업들이 직접 작성한다?”,

2015.9.9. 기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201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국문초록

본고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무효 확인 소송(2014추514)이 경기도의회(피고)의 승소를 계기로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자체적으로 해오는 상권영향평가서가 과연 주변 상권영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에 대한 논의와 위 판례평석을 통해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고는 상권영향평가 제도자체와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판례평석이 혼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이 등록사항이고 업체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에의 적용과 동시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와 대·중소기업 등간의 상생이라는 입법의 취지를 살리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상공인의 목소리,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 등 사회적 합의를 담은 적절한 대안이 신속히 마련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법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다양한 자치법규도 보다 활성화되고 이로써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상권영향평가,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상생협력, 자치법규

Abstract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Legislation Policy Division

Sung, Eun-B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wo cases from the viewpoint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defendant) winning the lawsuit for invalidation of re-approval for the constitution and operation of the Gyeonggi Provincial Economic Impact Assessment Committee. The first is the review of whether the effect of the merchant's impact on the merchant is reflected in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effective by objectively reflecting the effect of the merchant's surrounding a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such as Gyeonggi Province to make the regulations on the commercial impact assessment that is not stipulated by the above law through the above precedent judgment. Therefore, I would like to keep in mind that this article contains both of them, so that the commercial impact assessment system itself and the case interpretation of this case ordinance are mixed.

The current law has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e registration of the impact of the evaluation of the commodity and the fact that the company itself is doing its own thing, and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to the domestic market through overseas cases. It is hoped that appropriate legislation will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social consensus that the legislation has already been initiated several time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at healthy distribution order and win-win. In addition, I hope that the local parliamentary autonomy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more active so that the law can be supplemented and utilized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소고

Key Words

Trade Impact Assessm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Law,
Large-scale Store, Win-Win Cooperation, Local laws and regulations